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6.3.22.] [대통령령 제27049호, 2016.3.22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·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합성수지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·전자제품의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, 중고 이동전화 단말기 수출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회수·인계·재활용의무 대상 전기·전자제품 등의 제품군 분류에서 이동전화단말기 제품군을 폐지하고 이를 통신·사무기기 제품군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6년 3월 22일

국무총리 황교안
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

⊙ 대통령령 제27049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재활용사업자"라 한다) 또는 법 제2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(이하 "자동차폐차업자"라 한다)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폐자동차재활용업자"라 한다)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(이하 "재활용사업자"라 한다)
2.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(이하 "자동차폐차업자"라 한다)
3.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
4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(이하 "폐가스류처리업자"라 한다)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재활용사업자,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로부터"를 "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"로 한다.

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"출고량에 관한 자료"를 "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(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)에 관한 자료"로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(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(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.

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"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"을 "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"으로, "6월 30일"을 "7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7월 20일"을 "8월 31일"로 한다.

제20조의2제3항 전단 중 "6월 30일"을 "7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7월 20일"을 "8월 31일"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"제15조의2제3항"을 "제15조의2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20일"을 "30일"로 한다.

제33조제15호 및 제35조제2항제15호 중 "제15조의2제3항"을 각각 "제15조의2제4항"으로 한다.

별표 3 제2호의 대상 제품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.
마. 이동전화단말기(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)

별표 3 비고 제27호를 삭제하고, 같은 비고 제10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, 같은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이동전화단말기: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

별표 4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,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제2015년"을 "2015년"으로 한다.

나. 통신·사무기기	kg당 433원 (이동전화단말기는 kg당 2,717원)	kg당 108원 (이동전화단말기는 kg당 2,162원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연도별 재활용의무량·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,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·회수의무량의 산출, 그 재활용·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 부과금·회수부과금의 산정·부과 등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6400호, 2015.7.13., 일부개정]	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049호, 2016.3.22., 일부개정]
<p>제12조(재활용사업자)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</p>	<p>제12조(재활용사업자)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13조(재활용정보의 제공) 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재활용사업자”라 한다)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(이하 “자동차폐차업자”라 한다)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“폐자동차재활용업자”라 한다)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·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 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·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자,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 재활용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3조(재활용정보의 제공) ① 다음 각 - - - - -</p> <p>- - - - - <u>자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 .</p> <p>1.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(이하 “재활용사업자”라 한다)</p> <p>2.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(이하 “자동차폐차업자”라 한다)</p> <p>3.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</p> <p>4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(이하 “폐가스류처리업자”라 한다)</p> <p>② - - - - -</p> <p>- - - - - <u>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15조의2(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·전자제품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(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)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3.12.30]</p> <p><신설></p>	<p>제15조의2(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환경부장관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(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(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④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·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(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)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(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)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3.12.30]</p>
<p>제19조의2(재활용부과금의 산정·부과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환경부장관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	<p>제19조의2(재활용부과금의 산정·부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7월 31일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④ - - - - - - - - - - 8월 31일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의2(회수부과금의 산정·부과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환경부장관은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</p>	<p>제20조의2(회수부과금의 산정·부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7월 31일 - - - - - - - - - -</p>

<p>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</p> <p>1. ~ 14의2. (생략)</p> <p>15. <u>제15조의2제3항에 따른</u> 전기·전자제품별 출고량의 접수·확인</p> <p>15의2. ~ 19의4. (생략)</p>	<p>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</p> <p>- .</p> <p>1. ~ 14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<u>제15조의2제4항에 따른</u> - - - - -</p> <p>15의2. ~ 19의4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6년 3월 22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
국 무 위 원
보건복지부 정 진 업
장 관

●대통령령 제27048호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·판매 사유)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“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제32조의3제1항제4호 중 “(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의약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국가 식별코드,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식별코드,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하는 13자리 숫자를 말한다)”를 “[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의약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국가 식별코드,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(이하 “수입자”라 한다)의 식별코드,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하는 13자리 숫자를 말한다]”로 한다.

별표 1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7호 중 “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로 한다.

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·판매 사유(제32조 관련)

부 칙

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였으나, 해당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약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13655호, 2015. 12. 29. 공포, 2016. 3. 30. 시행)됨에 따라,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6년 3월 22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
국 무 위 원
환경부장관 윤 성 규

●대통령령 제27049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재활용사업자”라 한다)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(이하 “자동차폐차업자”라 한다)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“폐자동차재활용업자”라 한다)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(이하 “재활용사업자”라 한다)
2.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(이하 “자동차폐차업자”라 한다)
3.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
4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(이하 “폐가스류처리업자”라 한다)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활용사업자,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로부터”를 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”로 한다.

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출고량에 관한 자료”를 “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(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)에 관한 자료”로 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(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(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.

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“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”을 “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”으로, “6월 30일”을 “7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7월 20일”을 “8월 31일”로 한다.

제20조의2제3항 전단 중 “6월 30일”을 “7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7월 20일”을 “8월 31일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“제15조의2제3항”을 “제15조의2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제33조제15호 및 제35조제2항제15호 중 “제15조의2제3항”을 각각 “제15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2호의 대상 제품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.

마. 이동전화단말기(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)

별표 3 비고 제27호를 삭제하고, 같은 비고 제10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, 같은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이동전화단말기: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

별표 4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,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2015년”을 “2015년”으로 한다.

나. 통신·사무기기	kg당 433원 (이동전화단말기는 kg당 2,717원)	kg당 108원 (이동전화단말기는 kg당 2,162원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연도별 재활용의무량·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,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·회수의무량의 산출, 그 재활용·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·회수부과금의 산정·부과 등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·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·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·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합성수지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·전자제품의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, 중고 이동전화단말기 수출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회수·인계·재활용의무 대상 전기·전자제품 등의 제품군 분류에서 이동전화단말기 제품군을 폐지하고 이를 통신·사무기기 제품군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6년 3월 22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
**국 무 위 원
고용노동부
장 이 기 권**

●대통령령 제27050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원의 임기)”를 “(위원의 임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